

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김혜지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혜지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재난시에 동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의 범위를 현행 30%에서 50%로 확대하여 자영업자,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